

「2026년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유망 창업기업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2026년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지역 내 혁신성·성장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의 도약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협약기간** : 협약체결 후 12개월('26.5월 ~ '27.4월 예정)
- 선정규모** : 5개사 (최종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사업화 및 육성프로그램 지원

구분	주요내용			
사업화지원	- 기업별 최대 1.9억원 이내 사업화자금 차등 지급			
	구분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
	기본지원	'26. 5. ~ '26. 12. (8개월)	선정기업 5개사	1등(1.6억원), 2등(1.4억원) 3,4등(1억원), 5등(9천만원)
추가지원	'27. 1. ~ '27. 3. (3개월)	우수기업 3개사	1등(3천만원), 2등(2천만원), 3등(1천만원)	
※ 추가지원은 최종평가('27.1.) 이후 지원 예정				
※ 사업계획서 내 자금 사용계획 작성 시 기본지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작성				
육성프로그램	- 투자유치 IR,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등 성장 지원			

2 신청자격 및 분야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대상 요건** :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아래 ①, ②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상장기업**

① 투자유치 실적, ② 지역소재 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필수	① 투자유치 실적	· 투자유치 실적이 누적 5억원 이상인 기업 · AC/VC로부터 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 증빙 (AC/VC 날인된 투자협약서(자유양식) 포함)
	② 지역소재 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광주지역 내 본사 를 두고 있는 기업
가점	③ 팀스 R&D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팀스 R&D 사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성공)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기업

* 2019년 3월 30일 이후 설립한 창업기업

※ 신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세부 분야[참고2] 참조

- **공고기간** : '26. 3. 30.(월) ~ '26. 4. 10.(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 <https://cei.creativekorea.or.kr/gwangju/>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이메일 및 문의 : due5584@ccei.kr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O.I팀 / 062-364-9158~9

3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직접지원	사업화자금	총 6.5억원(기업당 최대 1.9억원 차등지급) (기본지원 5.9억원, 추가지원 0.6억원) 인건비, 홍보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기계장치비, 재료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 R&D 기술고도화, 글로벌 시장진출
육성프로그램	G-유니콘 전담지원	선정기업의 대·내외 홍보 전담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투자유치 프로그램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IR데이 개최 등 투자자 및업 등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중소기업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확장 지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해외 진출 전문가 멘토링 및 유관기관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육성프로그램의 경우, 상기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선정기업에 사전 고지함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 계획인가 또는 변제 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 4.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④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1. 일반유희주점업
- 2. 무도유희주점업
- 3. 카지노 운영업
-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⑦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⑨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 해당하는 자(기업)
- ⑩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에 해당 하는 자(기업)
- ⑪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유니콘 사업(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등)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자(기업)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 심층평가 +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
- **평가단계 및 평가내용**

평가단계	평가개요
요건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투자유치금액 등 요건검토 * 서류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서류평가 제외
서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장소 : '26. 4. 16.(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10개사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류평가 동점 시 평가항목 순에 따른 고득점자 우선 선발,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심층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장소 : '26. 4. 20.(월) ~ 4. 21.(화), 대상기업 사업장 • 점검위원 : 투자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 • 점검대상 : 서류평가 통과기업 10개사 • 점검방법 : 광주소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력, 사업장, 사업 활동 확인 ※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공됨.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장소 : '26. 4. 30.(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발표대상 : 심층평가 통과기업 10개사 • 선정규모 : 5개사(최종순위 결정) • 평가방법 :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을 통한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사항 1) 평가 일정 및 장소,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표자 발표 원칙, 동점 발생 시 유니콘 성장가능성, 시장확장성, 투자유치 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3) 평가 전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G-유니콘 선정기업 홍보 예정(선정자 한함) 	

□ 요건검토

- (신청요건)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

구분	검토사항	비고
1	투자실적*	공고마감일 기준 누적 금액이 5억원 이상 및 투자유치 약속서
2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여부	지역 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3	채무불이행 여부	-
4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5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여부	-
6	휴폐업 여부	-

*투자실적의 경우 계약·주금 납입 완료 및 AC/VC 날인된 투자약약서 보유

□ **서류평가**

- (내 용)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 (평가방법)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내부 역량을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기준
기술성(30)	· 사업아이템 핵심기술 개발실적,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등
사업성(30)	· 목표 시장분석 및 사업화 전략,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시장성(30)	· 핵심기술의 제품 경쟁력, 시장성장성 및 차별화 전략 등
내부역량(10)	· 대표자 역량, 참여인력 역량 등

□ **심층평가**

- (내 용)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장심사
-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 (평가방법) 사업장 유무, 고용인원 및 사업화 단계 등 점검

<세부 평가기준>

구분	세부 평가기준
심층평가	· 관내 사업장 유무, 고용인원 및 사업수행 실적 등 점검

※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부적격 수혜기업 방지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

□ **발표평가**

- (내 용) 전문 평가위원 및 시민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
- (선정규모) 5개사(최종순위 결정)
- (평가방법) 발표시간 총 20분 이내 구성(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기업 대외비 내용을 제외하여 평가용 PT 발표자료 제출
 - 최종 선정기업 대상 고득점순으로 협약 사업비 차등 지급 의결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 항목
유니콘 성장 가능성(40)	· 국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가능성(20) · 기술/사업모델 고도화 및 확장 전략(20)
시장 확장성(30)	· 시장 규모의 성장성(15) ·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15)
투자유치 계획 및 가능성(30)	· 투자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15) · 외부 펀드/운영기관과의 연계 가능성(15)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6. 3. 30.(월) ~ '26. 4. 10.(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ue5584@ccei.kr)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팝업창 참고)
- 제출 서류 일체를 전자파일(한글, PDF)로 합본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명은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_신청기업명으로 제출
- 이메일 접수 외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16시 이후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및 증빙 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접수문의**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O.I팀 / 062-364-9158~9

- 문의가능시간 : 평일(월~금) 9시~18시 / 점심시간 제외(12시~13시)

6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메일 접수	'26. 3. 30.(월) ~ 4. 10.(금)
↓		
서류평가	▶ 자격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	'26. 4. 16.(목)
↓		
심층심사	▶ 발표평가 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심층심사	'26. 4. 20.(월) ~ 4. 21(화)
↓		
발표평가	▶ 전문가 대면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순위 선정	'26. 4. 30.(목)
↓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선정기업	'26. 4. 30.(수) 이후
↓		
사업화관리 · 지원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선정기업	협약일 ~ '27. 4. 30(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경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7 선정자의 의무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와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협약체결 및 육성프로그램(G-유니콘 전담지원, 글로벌진출 프로그램, 투자유치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참가 및 점검, 성과 평가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하며, 협약시 이행보증보험 제출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조회에 동의해야 하며,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유의사항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하거나 창업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제출된 사업계획 등 내용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선정 이후 중복수혜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2026년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붙임1-별지1												
3	투자유치 내역확인서	붙임1-별지2												
4	주주명부	붙임1-별지3												
5	중복지원 금지확약서	붙임1-별지4												
6	신청기업 현황조사표 (※엑셀자료 이메일 제출)	붙임2 (엑셀)												
7	투자유치 세부 내역서 (※엑셀자료 이메일 제출)	붙임3 (엑셀)												
8	<p>투자계약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투자자구분</th> <th style="width: 50%;">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td> <td>사업자등록증</td> </tr> <tr> <td>투자조합</td> <td>고유번호증</td> </tr> <tr> <td>개인(엔젤투자자)</td> <td>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td> </tr> <tr> <td>창업기획자</td> <td>창업기획자 등록증</td> </tr> <tr> <td>외국투자회사</td> <td>Certification of Registration</td> </tr> </tbody> </table>	투자자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 계약체결일 확인 필수 (사본가능)
투자자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9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10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원본)												
11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12	최근 3개년(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13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신청관련 원본서류 일체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사업신청 후, 추가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제출해야 함 ※ 발표평가 대상자는 PPT자료 별도 제출(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 ※ 최종 선정기업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에 필요한 별도 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 1

투자실적 인정범위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③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⑦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자
 -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⑫ **기술보증기금**
 -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⑭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 투자회사**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2)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 3)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4.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참고 2**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신산업 창업 세부 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 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㉔	우주
㉕	차세대 원전
㉖	양자
㉗	사이버 보안